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정보	성	한글	생년월일
	명	영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운송용조종사 <input type="checkbox"/> 사업용조종사 <input type="checkbox"/> 자가용조종사 <input type="checkbox"/> 부조종사 <input type="checkbox"/> 항공사 <input type="checkbox"/> 항공기관사 <input type="checkbox"/> 항공교통관제사 <input type="checkbox"/> 전문항공교통관제사 <input type="checkbox"/> 항공정비사 <input type="checkbox"/> 운항관리사		
자격번호		국적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정보	등급	유효기간	~

「항공안전법」 제38조제5항·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7항에 따라 자격증명서 유효성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한함)	수수료
발급담당자 확인사항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발급일자 기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에서 정한 수수료

###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누락된 사항과 오류가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이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02-3151-1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